

부산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1나4111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1나4111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2019가단319842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고, 피항소인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훈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현우

피고, 항소인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훈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현우

피고들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변론 종결 2023. 3. 15.

판결 선고 2023. 4. 26.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2019가단319842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 E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5.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E은 C에게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8. 2. 13. 접수 제69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D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은 피고 E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은 피고 D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2, 3항 및 제1심 피고(선정당사자) A과 C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20.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위 A은 C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18. 7. 20. 접수 제131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제1심 선정자 D과 C 사이에 별지 목록(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24.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위 D은 C에게 별지 목록(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8. 7. 25. 접수 제129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제1심 선정자 F과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15.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위 F은 소외 회사에 별지 목록(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17. 11. 16. 접수 제212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제1심판결 중 위 A, F에 대한 부분은 분리, 확정됨).

2. 항소취지

가. 원고

주문 제1항과 같다.

나. 피고 D

제1심판결 중 피고 D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분리, 확정된 위 A, F 부분 제외).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제2, 3매매예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제2, 3매매예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참조).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제2매매예약이 이루어질 당시에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와 갑16,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법원의 창녕군청 세무과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2매매예약 당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연대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제2매매예약이 있는 날로부터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2018. 3. 23.경 마산세무서에서 1억 원의 조세 체납을 이유로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점,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재고용보험료 등의 체납을 이유로 2018. 5. 21.경 소외 회사를 공공요금 체납자로 등록한 점, ④ 소외 회사는 2017. 7.경부터 이 사건 제2매매예약 당시까지 다수의 지방세를 체납하기도 하였던 점¹⁾, ⑤ C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E과 C은 부부 사이인 점, ⑥ 한편, 소외 회사는 2017. 2. 3. Y로부터 공사대금 3,630,000,000원인 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하였으나 2017. 10. 24.까지 위 공사대금 중 1,738,000,000원밖에 지급받지 못하였고, Y가 2017. 11. 6.경 잠적하여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려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제2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곧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며, 원고가 2018. 7. 17.경 사전 구상권을, 2019. 4. 30. 사후 구상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 제2매매예약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C에 대한 사전 구상권은 이 사건 제3매매예약 이전에 성립하였고, 이후 사후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3매매예약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1) 갑3, 15호증, 을1, 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I조합, J조합, K, 주식회사 L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매매예약이 체결된 2018. 2. 5.경 및 이 사건 제3매매예약이 체결된 2018. 7. 24.경 C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넉넉히 초과하여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C이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제2, 3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C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연대보증인인 C를 무자력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제2, 3매매예약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므로(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피고 D은, 이 사건 제3부동산은 Z 소중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C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제3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 D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중중이 이 사건 제3부동산을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 D은 이 사건 제3매매예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 E과 C 사이의 이 사건 제2매매예약 및 피고 D과 C 사이의 이 사건 제3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C에게, 피고 E은 이 사건 제2가등기의, 피고 D은 이 사건 제3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E에 대하여 이 사건 제2매매예약의 취소와 이 사건 제2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며, 피고 D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서호원

판사이효신

판사유현영

별지

재산세(건축물)	2017. 7.	62,870	2017. 11. 14. 완납
재산세(토지)	2017. 9.	60,330	2017. 11. 14. 완납
등록면허세(면허)	2017. 9.	4,500	2017. 11. 14. 완납
등록면허세(면허)	2017. 9.	4,500	2017. 11. 14. 완납
지방소득세(특별징수)	2017. 8.	71,380	2017. 11. 14. 완납
지방소득세(특별징수)	2017. 10.	85,630	2017. 11. 14. 완납
주민세(법인균등)	2017. 8.	55,000	2017. 11. 14. 완납
지방소득세(특별징수)	2018. 1.	103,920	2018. 3. 14. 완납
지방소득세(특별징수)	2018. 2.	70,850	2018. 3. 14. 완납
자동차세(자동차)	2017. 6.	180,540	2017. 7. 11. 완납
자동차세(자동차)	2017. 11.	92,010	2018. 1. 30. 완납
지방소득세(특별징수)	2017. 6.	78,300	2017. 7. 11. 완납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017. 9.	1,109,480	2017. 11. 14. 완납
주민세(법인균등)	2017. 8.	62,500	2017. 11. 14. 완납